

# 수돗물공급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수돗물의 공급방법, 요금징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2009.12.11., 2011.12.2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공급하는 수돗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개정 2011.12.20.>

② 공사가 공급하는 수돗물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규정의 승인 및 통지의무)** ① 이 규정은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제50조(준용 규정)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요금 등의 징수)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개정 2009.12.11., 2011.12.20., 2013.3.23., 2018.6.8.>

②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이 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고객이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통보하고 공사 홈페이지에 전문을 게시합니다. 이 경우 요금 및 그 밖의 공급조건은 변경된 규정을 따릅니다. <개정 2009.12.11., 2011.12.20., 2013.3.23., 2018.6.8., 2020.2.24.>

**제4조(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의 취지에 따라 고객과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05.10.5.>

**제5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개정 2011.12.20., 2020.2.24.>

1. "수돗물"이란 공사가 수도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물을 말하며, 고객의 구분과 수돗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합니다. <개정 2011.12.20., 2014.10.10., 2020.2.24.>
  - 가. 고객에 따른 구분 <개정 2011.12.20., 2020.2.24.>
    - (1) 1종 수돗물 : 지방자치단체인 고객이 수도사업 등에 사용하는 수돗물 <신설 2011.12.20.>
    - (2) 2종 수돗물 :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고객이 산업활동 등에 사용하는 수돗물 <신설 2011.12.20.>
  - 나. 수돗물의 종류 <개정 2011.12.20., 2020.2.24.>
    - (1) 원수 : 자연 상태의 수돗물 <신설 2011.12.20.>
    - (2) 정수 : 원수를 음용에 적합하게 처리한 수돗물 <신설 2011.12.20.>
    - (3) 침전수 : 원수를 침전하여 공급하는 정수가 아닌 수돗물 <신설 2011.12.20.>
2. "수도"란 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정수 또는 침전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합니다. <개정 2009.12.11.>
3. "수도시설"이란 원수·정수 또는 침전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과 용수구, 그 밖의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합니다. <개정 2011.12.20.>
4. "용수구"란 공사의 수도시설로부터 공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분기제수밸브에서부터 계량장치까지의 제수밸브·급수관·계량장치 및 이에 부속된 설비를 말합니다. <개정 2011.12.20., 2017.10.11.>
5. "계량장치"란 유량계시험실 및 부속설비(스트레이너, 제수밸브, 전송설비 등)을 말하며, 다음의 각 목과 같이 구분합니다. <개정 2011.12.20., 2017.10.11.>
  - 가. "유량계"란 공사 수도시설의 유수율관리, 시설 및 공정관리 등을 위한 수량측정용 기기를 말합니다. <신설 2011.12.20.>
  - 나. "수도미터"란 수돗물요금 산정을 목적으로 설치한 검침용 기기를 말합니다. <신설 2011.12.20.>
6. "고객"이란 공사가 공급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개정 2011.12.20.>
7. "수돗물요금단가"란 다음 각 목의 합계를 말합니다. <개정 2011.12.20.>
  - 가. "기본요금단가"란 설비비용 등을 회수하기 위한 요금단가로서 환경부장관의

- 승인을 받은 m<sup>3</sup>당 요금을 말합니다. <신설 2011.12.20.><개정 2013. 3.23., 2018.6.8.>
- 나. "사용요금단가"란 가동비용 등을 회수하기 위한 요금단가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m<sup>3</sup>당 요금을 말합니다. <신설 2011.12.20.><개정 2013.3.23., 2018.6.8.>
8. "배분계획량"이란 수도시설 건설 당시 그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계획된 물량을 말하며,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으로 조정된 경우에는 그 물량을 말합니다. <개정 2009.12.11., 2011.12.20., 2020.2.24.>
9. "계약량"이란 배분계획량 내에서 고객의 신청에 의해 공사가 승낙한 계약 물량을 말합니다. <개정 2011.12.20.>
10. "목표연도"란 수도시설 건설당시 확정된 배분계획량의 전부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된 연도를 말합니다. <개정 2011.12.20.>
11. "전년도 일평균사용량"이란 계약전 또는 계약량 재산정 전 최종 검침 월부터 이전 12개월 동안 사용한 물량을 해당 연도의 일수(365 또는 366)로 나눈 물량을 말합니다. <개정 2009.12.11., 2011.12.20., 2017.10.11.>
12. "사전 물사용협약"이란 수도시설 건설 또는 수돗물 공급 전에 고객과 체결한 공급 및 수수 계획 등에 관한 협약을 말합니다. <신설 2009.12.11.> <개정 2011.12.20.>
13. <삭제 2017.10.11.>
14. "전년도 최대사용월"이란 계약전 또는 계약량 재산정 전 최종 검침월 부터 이전 12개월 중 일평균사용량이 가장 큰 월을 말합니다. <신설 2017.10.11.>

## 제2장 사용신청 및 공급

### 제1절 사용신청 및 계약

제6조(규정승낙) 고객이 새로이 수돗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 규정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개정 2005.10.5.>

**제7조(사용계약 신청)** ① 수도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사에 수도물 사용계약(제22조에 따라 용수구 설치신청을 함께할 수 있음)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도물 공급을 위해 수도시설 건설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공사와 “사전 물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개정 2004.12.2., 2011.12.20., 2013.12.16., 2020.2.2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공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시밀리 또는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01.12.31., 2011.12.20.>

③ 사전 물사용협약을 체결한 고객의 계약신청량은 협약에서 정한 기본계약량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에 수도물을 사용하는 고객은 이를 추가하여 계약량을 변경합니다. <개정 2010.11.10., 2011.12.20., 2017.10.11., 2020.2.24., 2021.3.2.>

④ 지방자치단체인 고객이 하천환경 개선·생태환경 조성 등을 위해 여유 수도시설을 활용하여 한시적으로 원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수도물 사용계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설 2011.12.20.>  
<개정 2017.10.11.>

**제7조의2(단기계약과 장기계약)** ① 수도물 사용계약은 사용 고객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며, 단기계약(1년이내)과 장기계약(2~5년)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다만, 2개 이상의 용수구를 설치하여 같은 종류의 수도물을 사용하는 고객은 하나의 계약형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개정 2020.2.24.>

1. 1종 수도물 : 단기계약(1년이내) 또는 장기계약(2~5년)
2. 2종 수도물 : 단기계약(1년이내)

② 단기계약은 배분계획량 범위 내에서 계약량을 신청합니다.

③ 장기계약은 지방자치단체인 고객이 전년도 일평균사용량과 전년도 최대 사용월의 일평균사용량을 평균한 물량을 계약량으로 하고, 이를 계약기간 동안 매년 신청합니다. 다만, 전년도 최대사용월 일평균사용량 결정을 위한 월별 일평균사용량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량은 차감합니다.

1. 고객의 자체 취·정수시설 및 도수관로 개·보수 공사 중 수돗물 공급 제한 기간에 추가 사용한 물량
2. 제12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급수체계 조정된 물량을 해당월의 월력 일수로 나눈 물량
3. 제50조제3호에 따라 요금감면된 물량을 해당월의 월력일수로 나눈 물량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물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 해당월 일평균사용량 - 해당월의 수돗물 공급제한일수를 제외한 기간의 일평균 사용량
2. 해당월 일평균사용량 - 직전월 일평균사용량
3.  $\text{해당월 일평균사용량} - \text{직전월 일평균사용량} \times \frac{\text{해당월의 전년도 일평균사용량}}{\text{직전월의 전년도 일평균사용량}}$
4. 해당월 일평균사용량 - 직전3개월 일평균사용량
5.  $\text{해당월 일평균사용량} - \text{전년도 동월 일평균사용량} \times \frac{\text{수돗물 공급제한 직전월 일평균사용량}}{\text{수돗물 공급제한 직전월 전년도 일평균사용량}}$

⑤ 제3항제1호의 개·보수공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1. 수돗물 공급 제한 72시간 이전에 고객이 공사에 통보한 개·보수공사
2. 전년도 일평균 사용량 산정기간 중 3회 이내의 개·보수공사

⑥ 제3항에 따라 장기계약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인 고객이 자체 노후시설 폐쇄 등으로 수돗물을 계약량보다 10% 이상 추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돗물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설 2017.10.11.>

**제8조(사용승낙)** ① 고객이 제7조에 따라 수돗물 사용계약을 신청한 때에는

공사는 5일 이내에 수돗물 사용을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09.12.11., 2011.12.20., 2014.10.10.>

1. 해당 수돗물의 공급목적이나 배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2. 수도시설(취수원 포함)의 공급능력이 부족할 경우 <개정 2009.12.11.>
3. 수돗물사용 신청내용이 이 규정에 맞지 않거나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11.12.20.>

② 공사는 수돗물사용을 승낙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돗물사용 승낙서를 내어주며 이를 등기우편 등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발송일자를 미리 전화 등으로 알립니다. <개정 2020.2.24.>

③ 공사는 사용승낙시 다른 고객의 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03.11.3.><개정 2004.12.2., 2009.12.11.>

**제9조(사용승낙서의 성격)** 제8조제2항에 따른 수돗물사용승낙서는 수돗물 사용계약서와 같은 성질을 가집니다. <개정 2011.12.20.>

**제10조(사용계약의 성립)** 고객과 공사간의 수돗물사용계약 및 그 변경계약은 수돗물사용 승낙서를 고객에게 발송한 날에 성립합니다. <개정 2005.10.5.>

**제11조(사용계약기간)** ① 수돗물사용계약기간은 사용승낙서의 사용개시 예정일 또는 변경사용개시 예정일로부터 시작하여 수돗물사용 승낙시 정한 기간까지로 합니다. <개정 2009.12.11.>

② 단기계약은 사용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재계약, 계약해지 또는 변경이 없을 경우 해당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04.12.2., 2011.12.20.>

③ 장기계약은 사용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재계약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계약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계약량은 계약 종료월의 일평균사

용량으로 합니다. <개정 2009.12.11., 2011.12.20., 2020.2.24.>

**제12조(사용계약의 변경 및 재계약)** ① 이 규정의 변경 이외의 사유로 사용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의 수돗물 사용절차에 따라 고객과 공사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계약에서 단기계약으로의 변경은 계약체결 이후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합니다.(공사 사유에 따른 계약변경은 제외) <개정 2003.2.5., 2009.12.11., 2011.12.20.>

② 수돗물 사용계약은 계약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1.12.20.>

1. 단기계약은 고객의 배분계획량 범위에서 계약량을 연간 6회(공사 사유에 따른 변경 제외)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1.12.20.>
2. 장기계약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량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계약기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1.12.20.>

가.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1.12.20., 2017.10.11.>

나. 공사의 급수체계 조정사업으로 고객의 사용량이 변동된 경우(6개월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비율을 반영하여 기존 계약량 재산정)

다. 공사의 급수체계 조정 요청으로 고객의 수수물량이 변동된 경우(급수체계 조정 기간에 한하여 해당 조정량을 반영하여 계약량 재산정) <신설 2017. 10.11.>

③ 고객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변경 계약량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변경 희망일 3일 전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3일 이내에 승낙하고 수돗물사용승낙서를 교부합니다.

④ 고객의 계약량 합계는 해당 수도시설 용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설개선 등으로 당초의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수돗물공급이 가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1.12.20.>

⑤ 목표연도가 경과하였음에도 고객의 전년도 일평균 수돗물 계약량과 사용

량이 모두 배분계획량에 미달한 경우 고객은 미달 물량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미달 물량은 수도시설 연계·미급수지역 공급 확대 등으로 전환하여 사용합니다. 이 경우 미달 물량은 배분계획량에서 계약량과 사용량 중 큰 값을 차감한 물량을 말합니다. <개정 2004.12.2., 2009.12.11., 2021.3.2.>

⑥ <삭제 2003.01.31.>

⑦ 지방자치단체 장기계약 고객은 전년도 일평균사용량과 전년도 최대사용월의 일평균사용량을 평균한 물량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1.12.20.><개정 2013.12.16., 2017.10.11.>

**제13조(명의변경)** ① 매매 등으로 기존고객이 변경된 경우 신규 고객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객 명의변경신고서 및 제2항에 따른 채무인수계약서 사본을 공사에 제출하여 수도물사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01.12.31., 2003.2.5., 2011.12.20., 2020.2.24.>

② 제1항에 따른 명의 변경시 신규 고객은 수도물 사용에 관한 종전 고객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종전 고객의 연체요금에 대하여는 신규 고객과 종전 고객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신설 2003.2.5.><개정 2011.12.20.>

**제14조(고객 요청에 의한 사용계약 해지)** ① 수도물사용계약을 해지하려는 고객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도물사용해지신청서를 계약해지 희망일 3일전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0.2.24.>

② 고객이 계약해지 희망일에 용수구를 폐전하면 사용계약은 해지됩니다. 다만, 고객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09.12.11., 2020.2.24.>

**제15조(고객 책임 등에 의한 사용계약 해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물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2.24.)

1. 제20조에 따라 수도물 공급이 정지된 고객이 공사가 지정한 기한까지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할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객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1.12.20., 2020.2.24.>
2.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도물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3. 도시계획사업 등의 사유로 수도물공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수도물 사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미리 고객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신설 2020.2.24.>

**제16조(사용계약 해지후의 채권, 채무)** 사용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이 규정에 따라 발생한 요금 및 그 밖의 채권, 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1.12.20.>

## 제2절 수도물의 공급

**제17조(수도물 공급)** ① 공사는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객에게 교부하는 수도물사용승낙서에 명시된 사용개시 예정일 또는 변경 사용개시 예정일에 수도물을 공급합니다. 다만, 용수구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도물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행이 완료된 후에 수도물을 공급합니다. <개정 2004.12.2., 2011.12.20.>

② 고객은 사용개시 예정일을 변경하려면 당초 사용개시 예정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수도물 사용예정일 변경 통보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09.12.11., 2014.10.10., 2020.2.24.>

**제18조(수급지점 및 수도시설 연계운영 등)** ① 고객과 공사가 수도물을 주고받는 지점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승인한 실시계획에서 확정되어 건설된 공사의 수도시설과 고객의 용수구와의 연결부분으

로 합니다. <개정 2009.12.11., 2011.12.20., 2013.3.23., 2018.6.8., 2021.3.2.>

② 1종 고객은 수급지점 이후 수도시설과 광역상수도 시설간에 또는 고객의 수도시설간에 연계운영을 별지 제15호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신설 2021.3.2.>

③ 공사는 제2항의 고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3개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동일급수권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1호는 공사의 최근 수도시설 운영현황 자료로, 제2호와 제3호는 최근 상수도통계로, 제4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급수조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설 2021.3.2.>

1.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시설의 이용율이 60% 이상
2. 각 지방자치단체의 급수인구가 30만명 이하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연간급수량 중 광역상수도 정수수입량 40% 이상
4. 동일급수권 지정 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최종소비자에게 부과하는 30m<sup>3</sup> 이하의 가정용 요금 구간 및 단가가 동일하고, 30m<sup>3</sup>을 초과하는 구간의 요금 단가 수준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간 동의한 경우

**제19조(수돗물 공급의 중지)** ① 고객이 사용계약 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수돗물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까지 공사에 중지신청을 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 2003.2.5., 2005.12.7., 2022.8.5.>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수돗물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1.12.20.>

1. 수도시설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수도시설의 개·대체, 점검 등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 발생으로 수도시설 수원의 용수 공급능력이 부족한 경우 <개정 2017.10.11., 2020.2.24.>
4. 그밖에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17.10.11.>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수도물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과 기간을 미리 고객에게 알립니다. <개정 2011.12.20>

**제20조(수도물 공급의 정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 대하여 수도물의 공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의 수도시설 안전에 위험이 급박한 경우
2. 고객이 공사의 수도시설을 고의로 손상하여 중대한 손해를 주었을 경우
3. 고객이 공사의 승낙 없이 용수구를 개조·변조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개정 2020.2.24.>
4. 그 밖에 고객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에 중대한 손해를 주었을 경우 <개정 2011.12.20.>

② 공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해소를 요구하여도 고객이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고객에 대하여 수도물의 공급을 정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1.12.20.>

1. 요금, 연체금 등을 납기일 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1.12.20., 2013.12.16., 2017.10.11.>
2. 수도사업자가 아닌 고객이 공사로부터 공급받은 수도물을 타인에게 판매한 경우
3. 수도미터가 고장이거나 봉인이 파손된 경우 또는 사용량이 수도미터의 적정유량 범위를 벗어난 경우 <개정 2011.12.20., 2020.2.24.>
4. 수도미터의 고장신고 등을 지체하거나 수리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 <개정 2011.12.20.>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30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1.12.20.>
6. 공사와 협의 없이 수도미터의 설치 위치를 변경하거나 교체한 경우 <개정 2011.12.20.>
7. 제33조 및 제57조에 따른 공사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1.12.20., 2017.10.11.>
8.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도시설 안정에 위험이 있는 경우
9. 고객이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배분계획량을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다른 고객의 수도물 사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10.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이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개정 2011.12.20.>

③ 공사가 제2항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급정지 7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개정 2011.12.20.>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돗물의 공급정지 또는 사용의 제한으로 인하여 공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고객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1.12.20., 2022.8.5.>

**제21조(수돗물 재공급)** 제20조에 따른 수돗물의 공급정지 사유를 고객이 사용 계약해지 이전에 해소하고, 요금·연체금 등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공사는 지체 없이 수돗물을 다시 공급합니다. <개정 2001.12.31., 2011.12.20., 2017.10.11.>

## 제3장 용수구 설치 및 관리

### 제1절 용수구 설치

**제22조(용수구의 설치신청)** ① 고객이 용수구를 신규로 설치(이하 “용수구설치”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갖추어 별지 제6호서식의 용수구설치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수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기제수밸브에서 계량장치까지의 시설에 한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개정 2009.12.11., 2011.12.20., 2017.10.11.>

1. 용수구 시설개요 및 위치도
2. 수리계산서(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 한함)
3. 용수구의 평면도·단면도 및 구조도
4. 용수수요량 조서(사전협의 후 생략할 수 있음)
5. 수도미터기 설치계획서(기종, 구경, 설치장소 등) 다만, 용수구 설치 또는 변경신청시(사용중인 수도미터 고장이나 검정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변경신청 포함) 공사가 설치해 놓은 유량계를 수도미터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유량계 사용 동의서 제출로 같음합니다. <개정

2001.12.31., 2020.2.24.)

② 2종 수도물을 사용 중이거나, 사용하려는 고객(이하 “2종 고객”이라 한다)이 다른 고객의 용수구를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1호 서식의 용수구 공동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설 2011.12.20.>  
<개정 2020.2.24.>

**제23조(용수구의 설치승낙)** 고객이 제22조에 따라 용수구 설치 신청을 할 때에는 공사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7일 이내에 이를 승낙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용수구 설치승낙서를 교부합니다. <개정 2005.10.5., 2020.2.24.>

**제24조(용수구의 설치공사)** ① 용수구 설치하는 고객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에 이의 설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설치하는 고객과 공사가 협의하여 시행주체를 결정하되 고객이 시행할 경우 고객은 품질확보를 위한 별도의 협약을 공사와 체결해야 하며, 제2호의 설치하는 공사가 시행합니다. <개정 2022.8.5.>

1. 공사의 수도시설과 용수구의 연결공사. 다만, 수도시설 건설당시 수도물 공급계획에 반영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기제수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제수밸브의 신설을 포함합니다. <개정 2011.12.20., 2017.10.11.>
2. 계량장치 중 계량자료를 전송하기 위한 설비, 수도미터와 연결된 제수밸브를 원격조작하기 위한 설비 및 이 설비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공사 <개정 2011.12.20., 2017.10.11.>

② 용수구는 환경부의 「상수도설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1.12.20., 2021.3.2.>

③ 공사는 고객이 관리하는 계량장치 내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물 설치장소 등에 대해 미리 고객과 협의하여야 하며, 고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1.12.20>

**제25조(용수구설치 준공검사)** ① 고객은 신규 용수구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7.10.11., 2020.2.24.>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고객 참석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준공검사확인증을 고객에게 교부하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개정 2011.12.20., 2017.10.11., 2020.2.24.>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용수구 설치 내용이 부적합한 경우 고객은 이를 보완하여 준공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개정 2011.12.20.>

**제26조(용수구설치 비용부담)** ①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수구 설치 및 이와 관련된 공사비용은 고객이 부담하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은 공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용수구 이전설치에 관한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합니다. <개정 2011.12.20.>

② 고객이 용수구 설치를 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선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의 공사비 산정은 정부의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며, 표준품셈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가 미리 정해놓은 설계기준 및 자체품셈에 의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선납공사비는 공사 완료 후에 정산하며,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개정 2011.12.20.>

④ 공사가 고객의 위탁에 의해 시행하는 용수구 등의 설치공사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지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이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공사는 부득이한 경우 고객과 협의하여 용수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용수구 설치비용 및 부담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0.11.10.>

**제27조(수도미터의 설치기준)** ① 고객의 수도미터는 용수구별로 1대 설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개정 2005.10.5., 2011.12.20.>

② 수도미터 설치는 사용유량·수질·수압 및 관의 재질·수도미터 전후부의 직관거리 및 관의 기울기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형식과 구경을 선정하여야 하며, 전자기, 초음파, 차압식 수도미터의 경우 환경부의 「유량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최소유속이 0.3m/s 이상 확보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개정 2005.10.5., 2011.12.20.>

③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정유효기간이 정하여진 수도미터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검정을 필한 신품 수도미터로 교체 설치하거나, 공인기관으로부터 재검정을 받아 설치합니다. <개정 2001.12.31., 2011.12.20., 2020.2.24.>

④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검정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수도미터 중 구경이 350mm를 초과하는 공사 소유의 수도미터는 공사가, 고객 소유의 수도미터는 고객이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교정주기는 2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초음파식 유량계를 기준유량계로 사용하여 교정할 경우에는 수도미터가 설치된 지점에서 교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준유량계의 설치는 제2항에 규정된 수도미터 설치 기준을 따릅니다. <개정 2003.2.5., 2011.12.20., 2017.10.11.>

⑤ 수도미터는 수돗물사용량이 적정사용유량 범위 내에 있는 것을 선정하여 불감수량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1.12.20., 2020.2.24.>

⑥ 수도미터는 계량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1.12.20.>

⑦ 전원을 사용하는 수도미터는 정전시간을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시간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개정 2011.12.20., 2020.2.24.>

**제28조(급수조합)** ①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 이상의 2종 고객(계약신청량이 일 1천m<sup>3</sup> 이상에 한함)은 급수조합을 설치하여 용수구 설치, 요금납부 등을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09.12.11., 2011.12.20.>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고객은 제7조에 따른 수도물 사용 신청시 별지 제11호서식의 급수조합설립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1.12.20.>

**제29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금지 등)** ① 고객은 수도미터 작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특수가압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압저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1.12.20.>

② 고객은 수도미터를 설치한 장소에 수도미터의 검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그 밖의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11.12.20.>

③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고객에 대하여 공작물의 철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1.12.20.>

**제30조(수도미터의 봉인)** ① 고객이 수도미터를 설치, 교체 또는 수리한 경우에는 미리 공사에 요구하여 수도미터를 봉인하도록 한 후 수도물 사용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고객의 참석하에 수도미터를 봉인합니다. <개정 2011.12.20., 2020.2.24.>

② 공사가 관리하는 유량계를 고객이 수도미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미리 고객에게 봉인계획을 알려줍니다. 다만, 고객이 수도미터 봉인시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가 단독으로 봉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알립니다. <개정 2011.12.20., 2020.2.24.>

③ 수도미터 관리자는 수도미터의 봉인이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봉인이 파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11.12.20.)

## 제2절 용수구 관리

**제31조(용수구관리 및 비용부담)** ① 수도미터의 검사·성능시험 등 용수구의 유지관리와 그 비용부담은 고객이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관리하고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개정 2004.12.2., 2011.12.20.>

1. 제22조제1항제5호 단서와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된 시설 <개정 2011.12.20., 2020.2.24.>
2. 공사와 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서에서 정하는 사항

② 고객은 수돗물이 오염되거나 누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용수구를 관리하여야 하며, 오염 또는 누수가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개정 2005.10.5., 2020.2.24.>

③ 고객은 용수구의 설치 또는 관리에 참여하는 시공사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직접 수행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11.12.20., 2020.2.24.>

**제32조(고객 토지 등의 출입)** ① 공사는 수도시설관리, 용수구의 검사 및 수도미터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고객의 토지나 건물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고객의 동의를 받습니다. <개정 2011.12.20.>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소속직원이 출입할 때에는 공사의 신분증을 고객에게 제시합니다. <개정 2011.12.20.>

**제33조(용수구 검사)** 공사는 수도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객의 용수구를 검사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용수구의 개량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05.10.5.>

**제34조(용수구의 철거)** ① 공사는 공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용수구를 철거할 수 있습니다.

② 도시계획 사업시행 등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는 고객과 협의하여 용수구를 철거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05.10.5.>

**제35조(수도미터의 고장신고 등)** ① 수도미터 관리자는 수도미터에 고장 발생 시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알리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도미터 고장(이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 2011.12.20., 2020.2.24.>

② 고객 또는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고장신고를 받은 경우, 상대방이 관리하는 수도미터에 고장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또는 제36조에 따른 수도미터 성능시험결과와 수도미터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도미터 관리자에게 수도미터의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03.2.5., 2011.12.20.>

1. 구경이 350mm 이하인 수도미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되는 「수도미터 기술기준」 <개정 2011.12.20., 2020.2.24.>
2. 구경이 350mm를 초과하는 수도미터는 유속 0.3m/sec 이상의 조건에서 사용공차  $\pm 2\%$  <개정 2011.12.20.>

③ 수도미터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수리 또는 교체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수도미터를 수리 또는 교체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공사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수도미터의 성능시험)** ① 상대방이 관리하는 수도미터에 이상이 있다고 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고객은 공사에, 공사는 고객에게 공인기관의 수도미터 성능시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1.12.20., 2020.2.24.>

② 제1항에 따라 수도미터 성능시험을 요구받은 수도미터 관리자는 성능

시험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과 공사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1.12.20.>

③ 제2항에 따라 수도미터 성능시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개정 2011.12.20.>

1. 성능시험 결과 수도미터 오차가 제35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도미터관리자 <개정 2011.12.20.>
2. 성능시험 결과 수도미터 오차가 제35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용공차 이내인 경우 성능시험 요구자 <개정 2001.12.31., 2011.12.20.>

④ 제2항에 따른 수도미터 성능시험결과 오차가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경우의 수돗물사용량은 제42조에 따라 산정합니다. <개정 2011.12.20.>

⑤ 제2항에 따른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도미터를 고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1.12.20.>

## 제4장 요금의 계산 및 납부

### 제1절 사용량 산정 및 요금계산

**제37조(요금적용 시기)** ① 수돗물요금은 수돗물사용승낙서의 사용개시예정일 (또는 변경사용개시예정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계약신청량이 일 500m<sup>3</sup> 미만인 고객은 용수구 설치(변경) 준공검사확인증 교부일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09.12.11., 2020.2.24.>

② 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개시예정일(또는 사용개시변경일)에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때에는 수돗물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개정 2009.12.11.>

**제38조(요금의 계산기간 등)** ① 수돗물요금은 용수구가 설치된 고객별로 1개월마다 계산하며, 계산기간은 전월 정기검침일로부터 당월 정기검침일의 전일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개정 2005.10.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요금을 계산합니다.

1. 요금단가가 변경된 경우
2. 수돗물을 새로이 사용하는 경우
3. 사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4. 정기검침일을 변경한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③ 공사는 2개 이상의 용수구를 이용하여 같은 종류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고객이 각 용수구별 수돗물 요금을 통합하여 계산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수리검토 후 다른 고객의 수돗물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통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량 등 수돗물사용신청 및 승낙은 용수구별로 합니다. <개정 2003.2.5., 2005.10.5., 2020.2.24.>

**제39조(요금의 계산방법)** ① 수돗물요금 계산 시 적용하는 요금단가는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단가로 합니다. <개정 2003.11.3., 2018.6.8.>

② 수돗물요금은 다음 각 호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개정 2010.11.10., 2011.12.20.>

1. 기본요금 : 기본요금단가 × 월간 계약량

다만, 단기계약 고객의 월간 사용량이 월간 계약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월간 사용량(월간 계약량의 120% 한도)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개정 2010.11.10.>

2. 사용요금 : 사용요금단가 × 월간 사용량

다만, 단기계약 고객의 월간 사용량이 월간 계약량의 1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물량에 사용요금단가를 곱한 금액을 가산합니다. <개정 2010.11.10.>

③ 제2항의 월간 계약량은 수도물사용승낙서의 1일 계약량에 해당 월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며, 월간사용량은 제41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산정한 해당 월의 사용량을 말합니다. <개정 2011.12.20.>

④ <삭제 2009.12.11.>

⑤ <삭제 2009.12.11.>

⑥ 제2항의 수도물요금 계산시에는 다음 각 호를 차감합니다. <개정 2011.12.20., 2017.10.11.>

1. 제7조의2제3항의 장기계약 고객(제7조의2제6항 해당고객은 제외): 월간 계약량 × 기본요금단가(수도물요금단가의 30%를 한도로 함) × 별표 1의 할인율 <개정 2011.12.20., 2017.10.11.>

2. 제7조의2제6항의 장기계약 고객 : (월간사용량 - 다음 각 목의 월간 약정물량) × 수도물요금단가의 20%

가. 제7조의2제6항에 따른 최초 증량시점부터 잔여계약기간까지 : 최초 증량 시점의 계약량 × 1.1 × 해당월력일수

나. 재계약기간 : 직전 약정물량 × 1.1 × 해당월력일수 <개정 2010.11.10., 2011.12.20., 2017.10.11.>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도물요금 계산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물요금단가에 월간 사용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인 고객이 생·공용수 이외의 목적으로 원수를 사용하는 경우

2. 2종고객의 당월 사용량이 일평균 1,000m<sup>3</sup> 미만인 경우

3. 제59조에 따른 자율 절수 수요조정 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자율 절수 수요조정 기간에 한함. 다만, 장기계약 체결 고객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차감합니다.

· 월간사용량 × 기본요금단가 × 별표1에 의한 할인율(사용량으로 추가할인율 산정) <개정 2010.11.10., 2011.12.20., 2014.10.10., 2017.10.11.>

⑧ <삭제 2010.11.10.>

⑨ 장기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장기계약 해지시에는 그 동안의 할인금액은 다음과 같이 일할 계산하여 해당 고객의 익월요금에 가산하거나 별도 징수합니다. <신설 2013.12.16.>

$$\cdot \text{반납액} = \text{할인액} \times \frac{\text{잔여 계약기간(일)}}{\text{총계약기간(일)}}$$

⑩ 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수도물 요금 계산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계약량에서 해당하는 시간에 비례하는 물량을 제외하여 조정된 월간 계약량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단서에 대한 적용은 조정된 월간 계약량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신설 2022.8.5>

1.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도물 공급이 중지된 때부터 32시간이 초과한 경우 초과 시간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도물 공급이 정지된 때부터 32시간이 초과한 경우 초과 시간
3. 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도법」 제37조(급수의 긴급정지 등)에 따라 중지된 경우 중지 시간

**제40조(검침)** ① 검침은 매월 말일(이하 "정기검침일"이라 합니다)에 실시합니다. 다만,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침일 이외의 날에 검침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04.12.2., 2011.1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량이 일 500m<sup>3</sup> 이하인 고객에 대해서는 매 3개월 단위로 검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1.12.20.>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검침일에 검침을 하지 못한 때에는 전후기간의 일수비례에 따르거나 유선으로 고객에게 확인하여 사용량을 계산합니다. <개정 2011.12.20., 2020.2.24.>

④ 검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수도물사용 검침기록표에 고객이 알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개정 2001.12.31., 2004.12.2., 2011.12.20., 2020.2.24.>

1. 검침은 공사 직원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또는 공사의 참석

-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고객의 참석하에 실시합니다. <개정 2020.2.24.>
2. 원격계측설비를 갖춘 시설의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하에 고객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검침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2.24.>

**제41조(사용량의 계산)** ① 수도물 사용량은 수도미터에 따라 계량하며, 당월의 계량치에서 전월의 계량치를 차감한 수량으로 합니다. 다만, 1m<sup>3</sup> 미만은 당월 사용량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1.12.20., 2020.2.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2항에 따라 검침을 3개월 단위로 실시하는 경우 사용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개정 2011.12.20., 2020.2.24.>

1. 검침을 실시하지 않는 월의 사용량
  - 직전 검침분의 월평균사용량으로 합니다.
2. 검침 후의 사용량 재산정
  - 검침 후에는 해당 검침분의 월평균사용량을 요금계산 기간 동안의 월평균사용량으로 재산정합니다. <개정 2020.2.24.>
3. 요금 정산
  -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월사용량의 차이에 따른 월별요금의 과부족액은 검침월에 각각 정산합니다. <개정 2011.12.20., 2020.2.24.>

**제42조(사용량의 추산)** ①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수도미터의 고장 등으로 수도물사용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상가동기간의 수도미터 검침물량과 제2항에 따른 고장기간의 사용량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개정 2011.12.20.>

② 제1항에 따른 고장기간의 사용량은 다음 각 호 중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추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도 사용량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개정 2011.12.20.>

1. 직전 1개월의 실적에 의하는 방법
  - 사용량 = 직전 1개월의 일평균사용량×대상일수
2. 직전 1개월의 실적에 전년 동월 추세를 반영하는 방법
  - 사용량 = 직전 1개월의 일평균사용량×대상일수

$$\times \frac{\text{고장발생월의 전년도 일평균사용량}}{\text{고장발생 직전월의 전년도 일평균사용량}}$$

3. 직전 3개월의 실적에 의하는 방법

· 사용량 = 직전 3개월의 일평균사용량×대상일수

4. 검정공차 또는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오차의 수정에 의하는 방법

· 사용량 = 계량된 용량 ÷ (100% ± 기기오차) <개정 2001.12.31., 2009.12.11., 2017.10.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장기간이 24시간 미만이거나 전원을 사용하는 수도미터가 정전으로 인하여 계량기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고장 또는 정전시간을 제외한 그 달의 시간당 평균사용량에 정전시간을 곱하여 계산(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개정 2009.12.11., 2011.12.20., 2020.2.24.>

④ 수도미터가 2회 이상의 요금계산 기간에 해당하는 장기고장인 경우 2회차 이후의 고장기간에 해당하는 수도물사용량은 제2항에 따라 고장 직후 처음 적용한 일평균사용량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개정 2011.12.20.>

⑤ 수도미터 고장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고장시점은 수도미터 관리자가 상대방에게 수도미터 고장사실을 통보한 날로 하며 우편 등에 의한 통보시는 우체국 소인일 또는 문서 접수일로 합니다. 다만, 고장사실 통보일을 고장시점으로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공사가 협의하여 직전 수도미터 검침일을 수도미터 고장시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1.12.20.>

**제43조(사용량의 가산)** 고객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수도미터가 2개월 이상의 장기 고장인 경우(검정 및 교정 유효기간 만료 포함)에는 2개월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매월 사용량을 제42조에 따라 산출된 사용량의 100분의 5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해 수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2개월로 봅니다. <개정 2011.12.20.>

**제44조(요금단가)** <삭제 2001.12.31.>



## 제2절 요금의 납부

**제45조(요금납부)** ① 고객의 요금납부의무는 검침일 또는 사용계약 해지일에 발생합니다.

② 요금은 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 발생일로부터 공사가 지정한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기일이 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인 경우에는 납기일을 그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개정 2011.12.20.>

③ 공사는 고객이 제2항에 의한 납기일까지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요금 청구서를 납기일의 15일전까지 고객에게 송달합니다. 다만, 공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에게 요금청구서를 기한 내에 송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요금청구서를 재발급하고 별도의 납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01.12.31.>

④ 공사는 고객이 신청하는 경우 요금청구서를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전자고지할 수 있으며 요금청구서가 고객이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주소 또는 휴대전화 전자사서함에 저장된 때에 고객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고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전자고지 사용을 신청하며 하나의 사용계약에 대해 수신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2.8.5.>

⑤ 공사는 제4항에 따라 전자고지를 신청한 고객에게 요금의 일정액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2.8.5.>

**제46조(연체금)** ① 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고객은 납기일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를 연체일수로 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체가 발생한 월의 미납요금에 대한 연체금 총액은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최대로 합니다. 공사는 연체금을 다음달 청구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납기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납부시

- 미납요금 × (2/100) × (연체일수/월력일수) <개정 2022.8.5.>
  - 월력일수는 납기일 다음 날이 속한 월력일수를 적용하되, 납기일이 제45조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에는 월력일수에서 연장된 납기일수를 차감하여 적용
2. 납기일 다음 날부터 1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 납부시
- (미납요금 × 2/100) + [미납요금 × 1/100 × (처음 1개월 경과한 연체일수/2개월째 월력일수)] <개정 2014.10.10., 2017.10.11.>
3. 납기일 다음 날부터 2개월 경과 후 납부시
- 미납요금 × (3/100) <개정 2014.10.10.>

② <삭제 2003.11.3.>

③ 고객이 체납요금(미납요금 및 연체금)의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먼저 발생한 월의 요금에 대한 연체금, 미납요금 순으로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0.11.10., 2017.10.11.>

**제47조(이의신청 및 재계산)** ① 공사가 고지한 요금 등에 이의가 있는 고객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03.2.5.>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개정 2011.12.20., 2014.10.10.>

③ 요금 등의 계산에 오류가 있거나 착오 또는 수도미터 고장 등으로 요금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당월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그 차액을 가감합니다. <개정 2011.12.20.>

④ 요금 등의 납기일은 이의신청을 하거나 다시 계산하는 경우에도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⑤ 이의신청한 요금 등을 다시 계산한 결과, 요금을 과다 수납하였을 때에는 수납일의 다음날로부터 과오납금의 지급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한 시중은행의 해당기간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지불합니다. <개정

2001.12.31., 2009.12.11., 2011.12.20., 2014.10.10., 2020.2.24.)

**제48조(납부방법)** ① 고객은 요금 등을 공사가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2종 수돗물을 사용하는 고객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요금 등은 수납기관에 입금한 날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에 대한 유효한 거래승인이 이루어진 날에 공사에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22.8.5.>

② <삭제 2001.12.31.>

③ 수돗물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정액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04.11.18.>

**제49조(단수처리)** 요금 등의 청구금에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단수를 버립니다. <개정 2009.12.11.>

**제50조(요금감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돗물 요금 또는 연체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01.12.31., 2003.1.31.>

1. 삭제 <개정 2011.12.20., 2022.8.5.>
2. 삭제 <개정 2009.12.11., 2022.8.5.>
3. 특별재난지역 등 일시적인 경우로서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가 정하는 금액 <개정 2003.2.5., 2005.10.5., 2020.2.24.>
4. 2종 고객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 장애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만 19세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는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1.12.20., 2017.10.11.>
5. 제7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 사용시 계약량 범위 내에서 사용한 수돗물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신설 2010.11.10.><개정 2011.12.20., 2017.10.11.>
6. 제18조제3항의 요금 단가 수준을 결정한 고객에게 별표 2에서 정한 기본

요금을 감면하며, 감면기간은 5년으로 함 <신설 2021.3.2.>

**제50조의2(원수요금의 지원)** ① 공사는 원수의 수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수(제7조제4항제외) 또는 침전수를 공급받는 고객에게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가 두 개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월평균 3mg/L 초과<개정 2022.8.5.>
2. 총인(T-P) 월평균 0.1mg/L 초과<신설 2021.3.2., 개정 2022.8.5.>
3. 총유기탄소량(TOC) 월평균 4mg/L 초과<신설 2022.8.5.>
4. 조류경보 발령시<신설 2022.8.5.>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월의 원수 또는 침전수 요금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개정 2009.12.11., 2020.2.24., 2022.8.5.>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초과하는 월의 원수 또는 침전수 공급량 × 공사의 댐용수요금단가의 10%
2. 제1항제4호 : (해당하는 월의 조류경보일수 / 해당하는 월의 일수) × 해당하는 월의 원수 또는 침전수 공급량 × 공사의 댐용수요금단가의 10%

③ 제1항에 따른 원수의 수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합니다. <개정 2009.12.11., 2020.2.24., 2022.8.5.>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물환경보전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취수지점 직상류의 수질측정망측정자료(이하 "측정망 자료"라 한다)로 판단합니다. 다만, 해당 측정망 자료가 취수지점의 수질상태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수지점에서 가장 근접한 측정망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제4호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하천 지정 고시」의 상수원 구간 중 취수지점에서 가장 근접한 상류의 조류경보지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원수요금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 합산액을 다음 연도 3월까지 해당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개정 2011.12.20., 2022.8.5.>

⑤ 고객이 지원금 산정에 해당하는 수돗물요금을 미납하고 있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미납요금과 상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2.8.5.>

**제51조(중수도 요금감면)** ① 공사로부터 2종 수돗물을 공급받는 고객이 직접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수돗물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0.11.10., 2020.2.24.>

② 제1항에 따라 수돗물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고객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수돗물요금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2. 설계도, 평면도, 배관도 및 시방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 계통도 및 중수도 처리시설의 구조도
5. 중수도 사용계획서 및 수도미터 제원 <개정 2011.12.20.>

③ 제2항에 따라 수돗물 요금의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요금감면 여부를 고객에게 문서로 통지합니다. <개정 2011.12.20., 2020.2.24.>

④ 제1항에 따른 요금감면은 공사가 고객에게 직접 공급한 수돗물을 재처리하여 사용한 중수도량에 기본요금단가(수돗물요금 단가의 30%를 한도로 함)의 3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개정 2001.12.31., 2009.12.11., 2011.12.20.>

⑤ <삭제 2009.12.11.>

⑥ 제4항에 따른 요금감면 물량은 수돗물 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하며 중수도 생산에 별도의 침전지, 여과지 등의 재처리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용도의 중수도 사용량은 요금감면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개정 2010.11.10., 2011.12.20., 2013.12.16.>

⑦ 고객이 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수돗물과 다른 수도사업자 또는 별도의 취수원으로부터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여 중수도를 생산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중수도 사용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text{감면대상 중수도사용량} = \text{전체중수도사용량} \times \frac{\text{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수돗물사용량}}{\text{중수도 총생산량을 제외한 물사용량}}$$

〈개정 2009.12.11., 2011.12.20.〉

⑧ 고객은 중수도 사용량을 계량하기 위하여 이에 적합한 별도의 수도미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수도 수도미터의 설치, 관리 및 추징금 부과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수돗물 관련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수돗물 관련규정을 준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과 공사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개정 2009.12.11., 2011.12.20.〉

⑨ 공사는 중수도시설 및 수질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의 시설을 방문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수도시설 및 수질기준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및 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를 적용합니다. 〈개정 2011.12.20.〉

**제52조(선수금)** ① 공사는 일시적으로 수돗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예상 월간요금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으며, 동 금액은 수돗물요금에 충당하고 과부족은 정산합니다. 〈개정 2020.2.24.〉

② 공사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2009.12.11., 2020.2.24.〉

③ 제1항에 따른 선수금에 대해서는 시중은행 보통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제2항에 따른 선수금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요금에서 차감합니다. 〈개정 2009.12.11., 2014.10.10., 2020.2.24.〉

## 제5장 기 타

**제53조(보증금)**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예상 월간요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보증금(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은행 지급보증서)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요금 등의 미납으로 수도물의 공급중지가 되었던 고객
2. 요금을 반복적으로 3회 이상 연체하여 납부한 고객

② 보증금의 예치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사용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사용계약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개정 2009.12.11.>

③ 공사는 사용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요금의 납부가 연체된 경우에는 보증금 및 그 이자를 고객의 채무액에 충당하고 정산할 수 있습니다.

④ 공사는 현금으로 예치한 보증금에 대하여는 시중은행 보통예금의 평균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불합니다. <개정 2009.12.11., 2014.10.10.>

**제54조(추징금)** ① 고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도미터의 개조 등 부정확한 방법으로 수도물을 사용함으로써 요금산정이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요금을 징수하는 이외에 그 금액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추징금을 받습니다. <개정 2011.12.20., 2020.2.24.>

② 제1항의 경우 부정하게 사용한 기간 및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고객과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개정 2001.12.31., 2011.12.20., 2020.2.24.>

**제55조(시설안전 및 수질관리의 책임)** 공사와 고객간의 수도시설에 대한 안전 및 수질관리의 책임한계는 수급지점으로 하며, 공사가 관리하는 수도시설 및 계량장치는 공사가, 고객이 관리하는 용수구는 고객이 각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현지 시설의 상태 또는 기술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객과 공사가 협의하여 수급지점 이외의 지점을 수도시설안전의 책임한계지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05.12.11., 2011.12.20.>

**제55조의2(추가 수처리 비용 등)** 공사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추가 수처리 및 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수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용산출 및 부과방법 등 세부 사항은 해당 고객과의 협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0.11.10.>  
<개정 2011.12.20., 2020.2.24.>

**제56조(손해배상의 면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5조에 따라 사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개정 2011.12.20.>
2.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개정 2011.12.20.>
3. 제20조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개정 2011.12.20.>
4. 그 밖에 공사의 책임사유가 아닌 누수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1.12.20.>

**제57조(자료제출 협조 및 통지의무)** ① 공사는 고객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은 지정 기일 내에 정확한 자료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이미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1.12.20.>

③ 제7조에 따라 장기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사용량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72시간 전에 이를 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신설 2003.11.3.><개정 2009.12.11., 2011.12.20.>

**제58조(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 공사는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공사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05.10.5.>

**제59조(자율 절수 수요조정 제도)** 공사는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돗물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1종 고객과 협약에 의해 자율 절수 수요조정 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절수 실적에 따른 지원금 및 위약금 규모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 세부기준으로 정합니다. <신설 2017.10.11.>

### **부칙 (1982. 12. 30. 제정승인)**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공업용수공급규칙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결정, 허가, 요금 등 기타처부사항은 이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부칙 (1983. 7. 14. 개정승인)**

(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984. 4. 18. 개정승인)**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체납된 용수요금의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1984. 11. 28 개정승인)**

(시행일) 이 규정은 198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985. 2. 9 개정승인)**

(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1. 31 개정승인)**

(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3. 23 개정승인)**

(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1. 17 개정승인)**

(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8 개정승인)**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6. 8 개정승인)**

(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 14 개정승인)**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5. 20 개정승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침전수 요율적용) 울산, 온산공업용수도의 온산정수장, 여천공업용수도의 남수정수장 및 낙동강계통광역상수도의 구미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용수의

요금산정에 있어서는 침전수 요율을 적용한다.

**부칙 (1993. 8. 7 개정승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침전수 요금단가 적용) 제5조 제4호의 규정의 침전수를 사용하는 수요자의 요금계산에 있어서는 침전수 요금단가를 적용합니다.

**부칙 (1994. 4. 8 개정승인)**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8. 1 개정승인)**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8. 7 개정승인)**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2. 28 개정승인)**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7. 28 개정승인)**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7. 16 개정승인)**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998. 12. 31 개정승인)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배분량 산정) 이 규정 시행시의 수요자별 배분량산정은 수도시설 건설 당시 확정된 배분계획량 또는 이 규정 시행 직전의 급수결정량을 전제로 수요자의 신청을 받아 다시 산정합니다. 다만, 공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배분량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도시설 건설당시 확정된 배분계획량을 적용하고 배분계획량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직전의 급수결정량을 배분량으로 산정합니다.
- ③ (요금단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의 수도물요금은 수도물요금산정지침의 개정에 따라 산정한 다음표의 개정요금단가를 적용합니다.

(단위:원/m<sup>3</sup>)

용도	수종	종전요금단가		개정요금단가	
		기본요금	계량요금	설비요금	사용요금
생활용 공업용	원 수	70.54	24.14	28.40	66.28
	정 수	123.09	34.43	47.25	110.27
	침전수	117.97	27.71	43.70	101.98

### 부칙 (2001. 12. 31 개정승인)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연체료에 대한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최초의 연체료로서 수도요금에 가산되는 부분부터 적용합니다.

### 부칙 (2003. 1. 31 개정승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수도물사용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당시 체결된 수도물 사용계약은 이 규정의 시행일에 제3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택 I

요금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택Ⅱ 요금으로 재계약을 원하는 수요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도물사용계약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수도물 사용계약은 이 규정 시행일에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제3조(계약량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6회의 계약량 변경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제4조(가산금에 대한 적용례)** 연체료에 대한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부칙 (2003. 11. 3 개정승인)**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2004. 11. 18 개정승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이 규정 시행당시 체결된 장기사용계약에 관한 특례)** 이 규정 시행당시 체결된 장기사용계약을 재계약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준물량은 종전의 계약량으로, 계약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5년까지로 하며, 할인율은 제3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계약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부칙 (2004. 12. 2. 개정승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이 규정 시행당시 체결된 장기사용계약에 관한 특례)** 이 규정 시행당시 체결된 장기사용계약을 재계약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준물량은 종전의 계약량으로, 계약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5년까지로 하며, 할인율은 제3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계약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부칙 (2005. 10. 5 개정승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가산금에 대한 적용례) 연체료에 대한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 부칙 (2009. 12. 11. 개정승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이 규정 개정전의 장기사용계약 에 관한 특례) 이 규정 시행전에 선택 II요금을 체결한 고객은 아래 표에 의한 기본요금할인율을 적용받거나, 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택II 요금으로 재 계약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량은 계약전년도 일평균사용량으로 합니다.

#### 〈장기사용계약 기본요금 할인율〉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신규계약	0%	3%	6%	9%	12%
재계약	3%	6%	9%	12%	15%

1. 신규 계약시는 1년이 경과한후 2차년도부터 할인율 적용
2. 재계약시는 1차년도부터 할인율 적용제3조(이 규정 개정전승인된 중수도요금감면에 관한 특례) 이 규정 시행 전중수도 요금감면을 승인받은 고객은 아래표에 의한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중수도 요금감면율〉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부터
감면단가	기본요금 단가의 60%	기본요금 단가의 40%	기본요금 단가의 30%

### 부칙 (2010. 11. 10. 개정승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요금감면 및 원수요금 등의 지원에 대한 적용 예) 제50조제5호 및 제50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요금단가가 조정되어 시행되는 시점부터 적용합니다.

**제3조(이 규정 개정 전 체결된 선택Ⅱ요금에 관한 특례)** 제39조제6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전 제7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라 계약 전년도 일평균사용량보다 10% 이상 증량하여 선택Ⅱ요금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종전의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종전의 규정 제39조제6항 및 제8항을 적용합니다.

### **부칙 (2011. 12. 20. 개정승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요금감면에 관한 특례)** 2010. 11.10 개정승인 규정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50조제5호에 따른 요금감면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적용합니다.

**제3조(이 규정 개정 전 체결한 계약사항에 대한 특례)**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체결한 계약은 종전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기존의 선택Ⅱ요금 고객(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량 5만 $m^3$ /일 이상인 2종 고객)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 **부칙 (2013. 3. 23. 개정승인)**

이 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2013. 12. 16. 개정승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이 규정 개정 전 체결한 계약사항에 대한 특례)** ① 종전의 규정에 의해 장기계약을 체결한 2종 고객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장기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② 기존의 2종 장기계약 고객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 **부칙 (2014. 10. 13. 개정승인)**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2017. 10. 11. 개정승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우리 공사와 맺은 계약에 대하여는 제7조의2 제3항에서 제5항까지, 제20조제2항제7호, 제4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② 장기계약을 체결한 1종 고객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개정된 규정으로 재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9조제9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칙 (2018. 7. 6. 개정승인)**

이 규정은 2018년 6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2020. 2. 24. 개정승인)**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2021. 3. 2. 개정승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장기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개정 전 규정의 별표 1 이용률 기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부칙 (2022. 8. 5. 개정승인)**

이 규정은 2022년 8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45조제4항·제5항, 제48조제1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별표 1) 장기계약에 따른 기본요금 할인율(제39조 관련)
- (별표 2) 동일급수권 기본요금 감면 (제50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수돗물 사용(변경)계약 신청서(제7조 관련)
- (별지 제1-1호서식) 환경개선용수 사용(변경) 계약 신청서(제7조 관련)
- (별지 제1-2호서식) 수돗물 사용계획서(제7조의2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수돗물사용 승낙서(제8조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고객 명의변경 신고서(제13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수돗물 사용계약 해지신청서(제14조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수돗물 사용 예정일 변경통보서(제17조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용수구 설치 신청서(제22조 관련)
- (별지 제6-1호서식) 용수구 공동이용 신청서(제22조 관련)
- (별지 제7호서식) 유량계 사용 동의서(제22조 관련)
- (별지 제8호서식) 용수구 설치 승낙서(제23조 관련)
- (별지 제9호서식) 용수구 준공검사 신청서(제25조 관련)
- (별지 제10호서식) 용수구 설치(변경) 준공검사확인증(제25조 관련)
- (별지 제11호서식) 급수조합 설립 신고서(제28조 관련)
- (별지 제12호서식) 수도미터 고장(이상) 신고서(제35조, 제36조 관련)
- (별지 제13호서식) 수돗물사용 검침기록표(제40조 관련)
- (별지 제14호서식) 수돗물 요금 감면 신청서(제51조 관련)
- (별지 제15호서식) 수도시설 연계운영신청서(제18조 관련)
- (별지 제16호서식)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전화 등) 사용(변경, 해지) 신청서  
(제45조 관련)

장기계약에 따른 기본요금 할인율

할인율	기본할인율(①)	추가할인율(②)
		계약량 기준 할인율
$(① + ②) \times \frac{\text{계약기간(년)}}{5}$	6%	$\frac{(\text{계약량} - 50,000m^3/\text{일})}{50,000m^3/\text{일}}$

\* 할인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동일급수권 기본요금 감면

1. 감면액 = 월간 계약량 × 기본요금단가 × 감면율

\* 월간 계약량은 일 5,000m<sup>3</sup>을 한도로 함

2. 감면율 : (a×b×c)로 산정하되, 감면율이 20% 미만은 20%로 함

㉠ 급수인구기준

(단위: 명)

5만이하	5만초과 10만이하	10만초과 15만이하	15만초과 20만이하	20만초과 30만이하
100%	80%	60%	40%	20%

㉡ 요금수준 : 당초 평균단가/변동 평균단가

0.90이하	0.90초과 1.00이하	1.00초과 1.10이하	1.10초과
25%	50%	75%	100%

\* 평균단가 : 10m<sup>3</sup>까지 50%, 11~20m<sup>3</sup> 40%, 21~30m<sup>3</sup> 10%로 가중평균하여 산정

㉢ 광역수수율 : 광역수입량/연간 총급수량

80%이상	60%이상 80%미만	40%이상 60%미만
1.0	0.8	0.6

\* 광역수수율은 최근 상수도통계를 기준으로 함

※ 다만, 급수인구 등 변동요인 발생시 감면율을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수돗물 사용(변경)계약 신청서

일반사항

고객명		주소			
신청자		연락처		대표자	
종 별	1종·2종	사업자등록번호	-	-	

계약사항 (변경계약, 장기계약량 재산정시에는 해당항목만 작성)

구 분	신규·변경 · 재산정	수 종	용 도	
계약신청량 (m <sup>3</sup> /일)		최대사용량 (m <sup>3</sup> /일)	사용예정일	
계약형태		단기·장기	기본계약량 (m <sup>3</sup> /일)	
계약기간		20 . . . ~ 20 . . .	( 년)	
장기계약량 적용기간		20 . . . ~ 20 . . .	( 년)	

용수구명	계약신청량 (m <sup>3</sup> /일)	최대사용량 (m <sup>3</sup> /일)	배수지 (예비저수조) 용량	사전 물사용 협약체결 여부
계				

※ 용수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계획에 따라 관련 정보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 환경개선용수 사용(변경) 계약 신청서

□ 일반사항

고객명		주 소			
신청자		연락처		대표자	
고객형태	1종	사업자등록번호	- -		

□ 계약사항 (변경계약시에는 해당항목만 작성)

구 분	신규·변경	수 중	원수	계약형태	단기
계약신청량 (m <sup>3</sup> /일)			사용예정일		
계약기간	20 . . ~ 20 . . (1년)				

용수구명	계약신청량 (m <sup>3</sup> /일)	최대사용량 (m <sup>3</sup> /일)	비고
계			



### 수돗물 사용계획서

고객명		주 소					
제출자		연락처		대표자			
종 별		사업자등록번호	- -				
추가 사용 계획	수 종	<input type="checkbox"/> 원수 <input type="checkbox"/> 정수 <input type="checkbox"/> 침전수					
	신청 사유	<input type="checkbox"/> 자체 노후시설 폐쇄 (시설명 : , 시설용량 : m <sup>3</sup> /일)					
		<input type="checkbox"/> 기타					
	용 도	<input type="checkbox"/> 생활 <input type="checkbox"/> 공업					
	사용시기	년 월 일					
	수수지역						
	사용계획량 (m <sup>3</sup> /일)	00년	00년	00년	· ·	00년	00년
용수구명	사용량 (m <sup>3</sup> /일)	최대사용량 (m <sup>3</sup> /일)	배수지 (예비저수조)용량		사전 물사용 협약 체결 여부		
계약량	m <sup>3</sup> /일		약정물량	m <sup>3</sup> /일			

※ 약정물량 = 계약량 × 1.1

※ 월간약정물량 = 계약량 × 1.1 × 해당월력일수

「수돗물공급규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돗물 사용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 고객 명의변경 신고서

「수돗물공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고객의 명의변경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1. 전 고객 :

2. 변경사유 :

3. 변경연월일 :

                  년          월          일

신규고객 주소 :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자원공사

귀하





신규		처리기간
변경		7일 이내

### 용수구 설치 신청서

「수돗물공급규정」 제22조에 따라 용수구 설치(또는 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고객주소 :

성 명 : (인)

전화번호 :

한국수자원공사

귀하

※ 첨부서류

1. 용수구 설치개요 및 위치도
2. 수리계산서(지방자치단체 고객만 해당)
3. 용수구의 평면도, 단면도, 구조도
4. 용수수요량 조서(사전협의를 의하여 생략가능)
5. 수도미터 설치계획서(기종, 구경, 설치장소 등) 또는 계량기 사용동의서

### 용수구 공동이용 신청서

□ 이용신청자

구 분	기존 (용수구 설치자)	공동이용자		
고객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계약사항 (변경계약시에는 해당항목만 작성)

수종		공동사용 개시예정일	
공동 용수구	(위치, 시설 등 기재)		
계약형태	단기·장기계약		

\* 용수구 공동이용 고객간 계약형태(단기·장기계약)은 동일하게 신청·적용합니다.

고객명	사용신청량 (m <sup>3</sup> /일)	최대사용량 (m <sup>3</sup> /일)	배수지 (예비저수조) 용량	계약기간
				20 . . . ~ 20 . . . (년)
계				

### 〈 신청시 유의사항 〉

1. 기존 고객의 용수구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고객은 「수돗물공급규정」 제27조에 따라 별도의 수도미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용수구 공동이용 고객은 계약형태(단기, 장기)를 동일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별 계약량 산정이 어려울 경우 해당 용수구 전체사용량을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3. 용수사용량은 기존고객의 수도미터에 표시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존고객의 사용량은 용수구 공동이용 고객의 수도미터에 표시된 사용량을 차감한 물량으로 산정합니다.
4. 공동이용 고객에 대한 공사의 수돗물 공급책임 한계는 기존고객의 용수구 까지로 합니다.
5. 용수구를 공동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고객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공동이용 고객의 계약내용 변경시에도 변경내용에 대한 기존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6. 용수구의 공동이용을 동의해준 기존고객은 공동이용 고객의 승낙 없이 용수 사용을 제한하거나 용수구 공동이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용수구 공동이용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계약신청  
유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존고객(대표자)      :      (인)  
공동이용고객(대표자) :      (인)









## 용수구 설치(변경) 준공검사확인증

「수돗물공급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라 용수구 설치(또는 변경)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됩니다.

1. 고객 주소 :

성명 :

2. 용수구 설치장소 :

년      월      일

한국수자원공사

(인)

### 급수조합 설립 신고서

「수돗물공급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급수조합 설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1. 대표 고객명 : \_\_\_\_\_
- 2. 대표 고객 주소 : \_\_\_\_\_
- 3. 전화번호 : \_\_\_\_\_
- 4. 성 명 : \_\_\_\_\_ (인)

한국수자원공사 (인)

1. 조합의 명칭	
2. 조합의 위치	
3. 조합원의 수	
4. 조합 설립사유	

※ 첨부 : 계약 1부  
 (조합원의 구성내역, 사업계획, 요금 또는 비용부담조건 포함)



### 수돗물사용 검침기록표

고 객 명 :  
 분 기 관 : m/m

담 당 자 :  
 전화번호 :  
 적산배율 : 배  
 수도미터종류 :  
 수도미터설치일 : . . .

변경월일									
계약량 (m <sup>3</sup> /일)									

검침 연월일	일계약량 (m <sup>3</sup> )	월계약량 (m <sup>3</sup> )	전회 지침	금회 지침	전회 시간	전회 시간계 지침	산출 내역	금회 사용량 (m <sup>3</sup> )	누계 사용량 (m <sup>3</sup> )	검 침 자	참 석 자
					금회 시간	금회 시간계 지침					









**제1조(사용신청)** ① 고객은 하나의 요금청구서에 대하여 전자고지 사용(변경) 신청서에서 선택한 고지방법(휴대전화, 이메일) 중 하나 또는 모두의 방법으로 고지받을 수 있으며, 2인 이상의 신청인에게 각각 고지받을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의 신청인에게 고지받기를 원하는 고객은 각각 전자고지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신청인이 고객과 다른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를 받고 신청서에 대표자 날인 후 전자고지 사용(변경, 해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2조(발송)** 고객이 전자고지 사용(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선택방법에 따라 신청내용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로 납기일의 15일 전까지 요금청구서가 발송됩니다. 다만, 공사의 귀책사유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 요금청구서를 재발송하고 별도의 납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3조(송달)** 고객이 신청한 방법에 따라 공사가 전자고지하는 경우에는 요금청구서가 신청인이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주소 또는 휴대전화 전자사서함에 저장된 때에 고객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해지)** ① 전자고지 사용자가 전자고지 사용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종이 요금청구서가 발부됩니다.

② 하나의 요금청구서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청인이 있는 경우 종이 요금청구서를 발부받기 위하여는 모든 신청인이 각각 전자고지 사용 해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사용자 중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은 사용자가 있는 경우 그 사용자에게 전자고지되며 이 때 종이 요금청구서는 별도로 발부되지 않습니다.

**제5조(적용시기)** 전자고지 사용(변경, 해지) 신청은 당월 8일까지 신청한 것에 대하여 당월월부터 적용되며, 이후에 신청할 경우 익월 요금청구서부터 적용됩니다.

**제6조(요금할인)** 고객이 전자고지 사용을 신청한 때에는 하나의 요금청구서당 월 200원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고지 사용을 신청하더라도 종이 요금청구서를 같이 받기 원하는 고객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7조(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신청인이 선택한 고지방법으로 납기일 5일전까지 요금청구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을 경우 공사에 즉시 재발송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전자고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고객의 사정으로 전자고지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오(誤)도달이나 미(未)도달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8조(정보이용 및 활용)** 전자고지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고지와 관련된 납부자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가 수집 및 이용되며, 신청인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전자고지 사용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제9조(준용규정)** 신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돗물공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